

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13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광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김동훈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1.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합3405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86,977,835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46,977,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범위를 일부 감축하고, 채권양도계약 취소통지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마.’항을 ‘바.’항으로 고치며,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5, 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외 회사는 위 회생절차폐지결정 다음날인 2018. 5. 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33명의 채권자들을 비롯한 전체 채권자들 중 10명의 채권자들¹⁾에게 소외 회사가 가진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일부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위 기간을 벗어나지만, 대부분의 채권양도계약이 위 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10명의 채권자들 이외의 14명의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액 중 대략 20~30%에 해당하는 소액을 변제하는 대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16.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과 주식회사 E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697,747,1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7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에서 원고가 2020. 2. 12. 위 채권액 중 403,273,961원만을 배당받은 사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진행된 감정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018. 12. 27. 기준으로 481,313,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18. 12. 27.로부터 7개월 정도 전인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일(2018. 5. 1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481,313,000원 정도임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481,313,000원을 초과하는 216,434,100원(= 697,747,100원 - 481,313,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2, 15 내지 19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AE, Y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가 여러 채권자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2018. 3. 13.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48호)을 받고 약 1개월 반 가량이 경과한 2018. 5. 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이미 사업을 계속할 조직 및 동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는 그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까지 받은 소외 회사로서는 가능한 다수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의 청산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고, 소외 회사가 이를 저버리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적극재산, 특히 채무의 본래 목적이 되지 않은 타인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그 일부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게 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회생절차폐지결정 직후 전체 채권자들 중 피고를 비롯한 10명 정도의 채권자들에게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위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재산을 면탈할 것을 우려하여 2018. 4. 25. ‘회생결정이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산을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갑 제18호증),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폐지결정 직전인 2018. 5. 10. 소외 회사의 별지 목록 제1, 2항 각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5. 15.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기까지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259호). 비록 위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8. 5. 25.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고, 소외 회사가 2018. 6. 5. 신청한 가압류이의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319호)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이전에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8. 8. 3.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임의적인 적극재산 처분행위를 막기 위해 회생절차폐지결정 이전부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위 채권가압류 결정 바로 다음날인 2018. 5. 16.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956,435,70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그 중 891,152,119원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는데, 피고는 이미 2017. 11. 7.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F의 배우자인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태였고(을 제10호증), 2018. 5. 16.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외에 K 주식회사에 대한

81,547,160원 상당의 자재대금 채권을 양도받기도 하였다(을 제12호증). 비록 K 주식회사에 대한 위 양수채권을 피고가 실제로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외 회사로부터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물론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채권양도를 받거나 일부 소액 변제를 받은 다른 채권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피고는 비교적 다액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한 F은 1980. 6.경부터 2005. 5.경까지 약 25년간 피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왔고(갑 제12호증), 피고의 상호는 2014. 12. 22. 변경 전까지 소외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주식회사 AT’였던바, 피고는 소외 회사와 오랜 기간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 피고가 대표채권자로 지정되기까지 하였음을 고려하면(갑 제15호증),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 상태나 채권채무관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한 채권액 91,000,000원 중 86,977,835원을, 주식회사 E로부터 양수한 채권액 7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변제로 수령한 위 돈의 합계 146,977,835원을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86,977,835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46,977,835원(= 86,977,835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에서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

별지

목 록

1.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채권액 91,000,000원)
2.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채권액 70,000,000원)
3. 부동산
 - 가. 경기 양평군 AH 임야 137㎡
 - 나. 경기 양평군 AI 전 83㎡
 - 다. 경기 양평군 AJ 도로 5㎡
 - 라. 경기 양평군 AK 도로 6㎡
 - 마. 경기 양평군 AL 답 231㎡
 - 바. 경기 양평군 AM 전 139㎡
 - 사. 경기 양평군 AN 전 601㎡
 - 아. 경기 양평군 AO 전 370㎡
 - 자. 경기 양평군 AP 도로 30㎡
 - 차. 경기 양평군 AQ 도로 60㎡
4. 부동산
 - 가. 경기 양평군 AR 전 916㎡
 - 나. 경기 양평군 AS 임야 2,139㎡. 끝.

1) 이 중 2명의 채권자는 위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